

심사위원회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- 「공공성 강화방안」(20.7.14.발표)의 일환으로 보증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2. 주요 개정 내용

- 가. 안전 담당에 따라서 경영심사위원회, 보증심사위원회, 기금심사위원회, 내부통제심사위원회로 구분함 (안 제1조의2)
- 나.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약관 및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경우 공공성 심사기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고, 위원의 심사의견이 있는 경우 의사록에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첨부하도록 함 (안 제8조의2)
- 다. 공공성 심사기준을 마련함 (안 별표)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0년 8월 26일 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18층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
- 담당자(이메일) : 고동우 차장(kdw@khug.or.kr)
- 전화번호 : 051-955-5632
- 팩스번호 : 051-955-5306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 (기간 20일 미달 시)

- 신속한 제도개선으로 보증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
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첨 부 :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【첨부】

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< 신 설 >	<u>제1조의2 (구분) 위원회는 안전 소관본부 및 부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/u> 1. <u>경영심사위원회 : 경영전략본부, 사장직속기구 소관 안전</u> 2. <u>보증심사위원회 : 금융사업본부, 자산관리본부 소관 안전</u> 3. <u>기금심사위원회 : 주택도시기금본부 소관 안전</u> 4. <u>내부통제심사위원회 : 감사실 소관 안전</u>	안전소관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분
< 신 설 >	<u>제8조의2 (공공성 심사) ① 보증 심사위원회에서 제8조제1항 제2호의 사항을 협의할 경우 별표의 공공성 심사기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공공성 심사 결과 위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제8조 제4항의 의사록에 위원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.</u>	보증 산상품 및 제도개선에 대한 공공성심사도입
	<u>부 칙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적용례) 이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심사위원회 개최 통지한 건부터 적용한다.</u>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 신 설 > [별지서식] [협의사항] 참 석 자 서 명 록 [제 차 심사위원회 : 20 . . .] 1. 의안 :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성 명</th><th>서 명</th><th>의 견</th></tr><tr><td>위 원 장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감사실장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구 분	성 명	서 명	의 견	위 원 장				위 원				위 원				위 원				위 원				위 원				위 원				위 원				감사실장				[별표] (제8조의2와 관련) 공공성 심사기준 상세내용 별지 참조 [별지서식] [협의사항] 참 석 자 서 명 록 [제 차 심사위원회 : 20 . . .] 1. 의안 :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성 명</th><th>서 명</th><th>의 견</th></tr><tr><td>위 원 장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감사실장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 ※ 제8조의2에 따른 공공성 심사 시 별표 ‘공공성 심사기준’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	구 분	성 명	서 명	의 견	위 원 장				위 원				위 원				위 원				위 원				위 원				위 원				위 원				감사실장				공공성 심사기준 마련 위원이 참석자 서명록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함
구 분	성 명	서 명	의 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사실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성 명	서 명	의 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사실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별표] (제8조의2와 관련) 공공성 심사기준

구분	심사내용	심사항목	심사기준
공공성 ^{주1)} 심사기준	공정성 ^{주2)}	주거 안정	사회배려계층(저소득자,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청년층 등)의 주거 안정에 대한 기여도
		균형 발전	지역 균형 발전 및 대기업·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도
	공익성 ^{주3)}	사회 기여	주택공급, 주택시장 안정 등 관련 정부 주택정책 기여도

주1) 공공성(公共性) : 한 개인이나 특정 이해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와의 관련성

주2) 공정성(公正性) : 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 및 재분배의 형평성 정도

주3) 공익성(公益性) :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자원 투입 및 배분 상태

【별첨】

관련 규정

□ 심사위원회규정

제8조 (협의사항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업무·제도의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
2. 약관 및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
3. 기본사업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
4.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5. 신용조사 및 평가기준의 선정과 신용평가등급의 업무적용기준 결정
6. 주전자계산기의 도입 및 전산화대상업무의 용역개발사항
7. 부서별 업무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
8. 현재 시행중인 방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할
사항중 소관본부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②~③ (생략)

④ 협의사항에 대한 의사록은 결재서류 또는 상임이사회 의안에
첨부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